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광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197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05월 25일
발 의 자: 이광호 의원(1명)
찬 성 자: 경만선, 김제리, 김태수,
김호진, 양민규, 정재웅,
정지권, 최웅식, 홍성룡
의원(9명)

1. 제안이유

- 택시는 필수교통수단인 대중교통과 달리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탈 수 있는 선택적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택시요금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시민생활 안정을 해치지 않음
- 일반택시(중형) 요금은 서울시의 운송원가 검증용역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택시정책위원회와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과 서울시의 회의 의견청취를 통해서 시민생활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함에도 또다시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물가심의를 거치는 것은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함
- 택시는 대형승합택시와 고급택시의 경우 요금을 신고만 하도록 자율화되어 있고, 2020년 플랫폼사업제도가 도입되면서 플랫폼 가맹택시도 요금을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 중형택시 요금만 신고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대중교통요금 수준으로 규제되어 관련법 상 신고제인 상위법 취지에 맞게 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교통요금 중 택시요금을 제외하고자함 (안 제3조제2항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호의 “교통요금(시내버스·마을버스요금, 고급형 택시를 제외한 택시요금 및 도시철도요금)”을 “교통요금(시내버스·마을버스요금, 도시철도요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능) ① (생략)</p> <p>1. ~ 5.(생략)</p> <p>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u>교통요금(시내버스·마을버스요금, 고급형 택시를 제외한 택시요금 및 도시철도요금)</u></p> <p>2. ~ 5.(생략)</p>	<p>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1. ~ 5.(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u>교통요금(시내버스·마을버스요금, 도시철도요금)</u></p> <p>2. ~ 5.(현행과 같음)</p>